

프랑스 연금개혁 : 주요 사회 갈등 요인

Jean Marie Pernot (Political Scientist, Institut de Recherches Economiques et Sociales)

■ 서론

2023년 4월 15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동자 연금제도 개혁 입법에 서명하였다. 기타 조항들을 수반한 이 법에 의해 법정 정년은 62세에서 64세로 연장되었다. 2023년 1월에 발표된 입법 계획은 대규모 장기적 시위의 시발점이 되었다. 입법 확정 이후에도 이러한 시위는 누그러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몇 주에 걸쳐 전국적으로 진행된 이러한 시위 운동이 프랑스에서 새로울 것은 없지만, 현 시위는 1968년의 장기 총파업과 대규모 학생 시위 이후로 목격하지 못했던 규모이다.

이 글에서는 연금개혁에 대해 프랑스 국민들이 이처럼 강력하게 반기를 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알아본다. 이를 위해 먼저 프랑스 연금제도의 오랜 역사를 되돌아보고자 한다.

■ 프랑스 연금제도의 역사

노동자 연금제도는 대부분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마련되었다. 이전의 연금제도는 특정 직종을 위한 것으로, 가장 먼저 선원 연금제도가 생겼고(17세기), 그다음으로 19세기 중반에 모든 군인과 공무원을 위한 연금제도가 도입되었다. 얼마 후에는 광부, 철도노동자, 가스 및

전기 사업 노동자, 파리 대중교통 노동자 등 여러 직종의 세부적인 업무상 특성에 맞춘 연금 제도들이 생겨났다.

1910년에는 “노동자 및 농민 연금법”을 제정해 모든 임금노동자에 대한 연금제도를 도입하였다. 두 번째 입법 시도는 1930년에 있었다. 두 법 모두 실패로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 이르러서야 그 당시 다른 유럽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프랑스에도 일반 연금제도가 수립되었다.¹⁾

사회보장제도는 1946년에 수립되었다. 이 제도는 가족, 건강, 연금, 산재의 4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험기반(insurance-based) 제도로서 페이고²⁾ 방식으로 재정을 조달한다는 두 가지 주요 원칙에 의해 운영된다.

전후 유럽 연금제도는 대부분 비스마르크 모델(보험기반)과 베버리지 모델(조세기반) 중 하나를 따른다. 프랑스는 비스마르크 모델을 적용하고 있다. 연금급여는 임금노동자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기여금에 의해 지급된다. 건강보험제도와 마찬가지로 연금제도는 선출직 노사 대표로 구성되는 이사회에서 공동으로 관리했는데, 제도 수립 당시에는 노동자 대표가 다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는 연금액이 적었다. 엔지니어와 고위 관리직(cadres)에게는 이 연금이 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치 않았고, 이에 따라 1947년에 보충연금제도를 신설하였다. 이 보충연금제도는 관리직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가 추가 기여금을 납부하여 기금을 만들어 운용함으로써 노동자는 퇴직 시 더 높은 수준의 대체 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1961년에는 다른 임금노동자들을 위하여 유사한 제도가 생겨났다. 두 제도 모두 (현재는 단일 제도로 통합되었지만) 일반 사회보장제도와는 달리, 재분배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었으며, 동수의 노동조합 대표와 사용자 대표들이 공동으로 관리하였다.³⁾ 이후 1967년에는 이러한 공동 관리 방식이 일반 사회보장제도에도 적용되었으며, 동시에 제도의 운영에서 정부가 점차 더 큰 역

1) Hatzfeldt, H.(1971), *Du paupérisme à la sécurité sociale (1850-1940) - Essai sur les origines de la sécurité sociale en France*, Paris : Armand Colin.

2) 편집자 주: “Pay as you go(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의 줄임말로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자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함을 강조하는 개념.

3) Charpentier, F.(2014), *Retraites complémentaires - Histoire et place des régimes Arrco et Agirc dans le système français*, Paris : Economica.

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가령, 기여금 요율을 정하고 사용자들에게 점점 더 많이 부여되는 기여금 감면을 상쇄하는 역할도 정부가 맡고 있다. 이와 같이 사회보장제도 전반과 특히 연금 제도의 관리에 국가가 개입하는 빈도는 높아지고 있다. 1990년대 이후로는 모든 가계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사회기여금” 제도⁴⁾ 등을 통해 세금으로 재정을 보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연금제도는 원래의 비스마르크 모델에서 점차 멀어지고 있다.⁵⁾

위에서 언급한 두 축, 즉 일반연금제도와 보충연금제도 외에, 세 번째 축으로서 과거에 수립된 특별연금제도들이 있는데, 그중 가장 큰 규모는 공무원연금제도로써 가입자 수가 400만 명이 넘는다. 이러한 제도들이 유지되어 온 이유는 다른 두 민간부문 제도보다 더 높은 수준의 대체 소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들을 서로 연계하고 심지어는 일반연금제도로 통합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는 약 15개의 특별연금제도가 남아 있다. 정부의 개혁안에는 그중 일부의 폐지도 포함되어 있다.

■ 퇴직자의 빈곤 예방

1960년대 후반까지도 퇴직은 대부분의 연금 수급자들에게 빈곤을 의미했다. 법정 최저 정년은 65세였지만 연금액은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연금액은 차츰 높아졌고, 1982년에는 신임 좌파 정부가 모든 노동조합들이 지지하는 요구안을 수락하여 완전연금(full-rate) 정년을 60세로 낮추었다. 60세에 완전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이 37.5년 이상이어야 했다. 연금액은 근무기간 중 소득이 가장 높았던 10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다. 그 이후로 연금 수급자들의 생활수준은 지속적으로 높아졌다. 수명도 계속 늘어나면서 퇴직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다. 퇴직은 더 이상 소외와 빈곤을 특징으로 하는 인생의 마지막 단계가 아니고, 어떠한 위계적 제약도 받지 않고 여가를 즐기며 손주나 부모를 돌보며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등 개인적으로 원하는 다양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시기가 되

4) 편집자 주 : 일종의 사회보장 목적세.

5) Barbier J. C., M. Zemmour, B. Théret(2021), *Le système français de protection sociale*, Paris : La Découverte.

었다.⁶⁾ 오늘날 프랑스에는 약 150만 개의 단체가 2,200만 명의 자원봉사자에 의해 운영되는데, 그중 35%가 연금 수급자이다. 이제 퇴직은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되었고, 바로 이 때문에 프랑스 국민들은 업무로 인한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인생의 이 시기에 상당한 애착을 갖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임금노동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면서 이러한 애착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⁷⁾

연금제도는 상당히 불평등하다는 점에 대해 유념해야 한다. 은퇴 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간은 평균적으로 약 10년으로 예상하지만, 실제로는 종사했던 업종, 다시 말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적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다. 무엇보다도 연금제도에 있어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경력 연속성이 낮기 때문에 불리한 입장에 있다.⁸⁾

■ 연금 지출 억제 방안

연금제도의 개선에는 비용이 따랐다. 퇴직자의 평균 생활수준이 노동계층의 생활수준에 맞추어 점차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이와 동시에 프랑스에서 이미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과세로 인식되고 있는 노년층을 위한 지출 전용 의무과세의 비중도 크게 증가하였다. 덕분에 프랑스는 유럽에서 가장 빈곤율이 낮은 국가이다. 연금액이 평균 소득의 60% 미만인 퇴직자의 비중이 10%인데, 이에 비해 유럽의 해당 평균 수치는 16%이며 독일은 19%, 벨기에는 16%,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각각 13%를 기록하고 있다.⁹⁾ 하지만 연금자문협의회(COR)의 예측에 의하면, 지난 10년에 걸쳐 이러한 지출액을 줄이기 위해 시행된 조치들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반전될

6) Guillemard, A. M.(2002), “De la retraite mort sociale à la retraite solidaire”, *Gérontologie et société*, Vol. 25, n° 3, pp.53~66.

7) Enquête IFOP pour Les Makers(2022), “Les Français et le Travail - 7 chiffres clés en 2023 (sondage IFOP)”, <https://lesmakers.fr/> (2023.5.26); Coutrot, T., C. Perez(2022), *Redonner du sens au travail*, Paris, Seuil, collection “La République des idées”.

8) Meurs, D., P. Pora(2019), “Égalité professionnelle entre les femmes et les hommes en France : une lente convergence freinée par les maternités”, *Économie et statistique*, n° 510-511, pp.109~130.

9) Statista, “Retraites, taux de pauvreté en Europe”, <https://fr.statista.com/> (2023.5.26).

수 있다고 한다.

이러한 비용 증가 경향을 되돌리기 위해 1980년대 후반부터 여러 개혁 방안이 시행되어 왔다. 처음에 정부는 몇 가지 수단만 활용했다. 가령, 연금은 임금 대신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조정되었다. 1993년에는 더욱 야심 찬 개혁에 의해 일련의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시작되었다. 연금액 산정 기준이 되는 최고 소득 기간이 10년에서 25년으로 늘어났다. 완전연금 자격이 주어지는 납부기간도 37.5년에서 40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다.¹⁰⁾ 2003년에는 이러한 요건이 모든 정부 직원, 공무원 및 지방정부 공무원에도 확대 적용되었다. 장기경력제도로 알려진 조치가 더해지면서 20세가 되기 전에 근무를 시작한 경우에는 60세 전에 퇴직할 수 있게 되었다. 2010년의 새로운 개혁안에 의해서는 총 보험가입 기간이 40년이 아니라 42년인 이들에게 완전연금이 지급되도록 변경되었으며, 이 조치는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을 가리지 않고 모든 노동자에게 적용되었다. 이른바 장기경력제도는 유지되었지만, 노동자들은 60세가 아니라 62세에 은퇴해야 한다. 2014년에 또 한 차례의 개혁에 따라, 페널티 없이 완전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납부기간도 43년으로 단계적으로 늘어났다.

2010년에는 연금제도 동향 관련 정보 제공 역할을 수행하도록 연금자문협의회(COR)가 설립되었다. 정부의 전문가, 의회 구성원, 노동조합대표 등 다양한 계층으로 구성된 기구로서, 연금제도의 중장기 전망에 대한 연례보고서를 발간한다.

프랑스 연금제도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전체 인구 6,800만 명 중 1,590만 명이 연금 수급자이다. 매년 신규 연금 수급자는 70만 명에 이른다. 2021년의 경우, 프랑스 GDP의 13.9%에 해당하는 3,940억 유로가 연금으로 지출되었다. 정부는 GDP 대비 연금 비중을 14%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이 하한선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

연금 수급자 1인당 납부자 수는 1.7인이며, 약 57만 명이 낮은 연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공적 지급금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금제도에 대한 전망은 불확실하다. 인구 동향은 예측하기 어렵고,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2022년 기준 여성 1인당 1.9명). 순이민 유입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¹¹⁾ 실업률, 노동생산성

10) 기여금 납부 분기가 누락된 경우 연금에 할인이 적용된다. 이것은 여러 번의 개혁을 통해 수정된 중요한 매개변수이다.

11) Institut national de la statistique et des études économiques (INSEE), *Bilan Démographique*

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러한 요소들은 중장기적인 예측이 어렵다.

■ 마크롱 정부와 연금개혁

2010년 개혁 당시 프랑스 대통령에 의하면, 이 개혁을 끝으로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연금 제도가 마련되었어야 했다. 개혁의 시행 과정 내내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시위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정부는 의회 다수파의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굳건한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실제로 개혁은 재정 관련 기준에 대해서만 시행되었을 뿐 어떠한 현안도 해결하지 못했다.

연금제도는,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경력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불평등한 요소들이 대부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연금제도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한 가지 주요 부분은 그대로 남겨 두었는데, 사용자들이 “나이 든” 노동자로 간주하여 해고하는 사례가 많은 55세 초과자의 고용 문제였다. 55세 초과자의 취업률은 지난 20년간 계속 증가하여 왔지만, 60세 초과 노동자의 취업률은 급락하여 정부의 강력한 유인책에도 불구하고 현재 유럽 평균을 밑돌고 있다.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 중에는 직원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노동조건도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일부 직종의 고된 특성을 고려하여 2003년에는 상당히 복잡한 체제가 마련된 바 있다. 여기서 “고됨(hardship)”이란 주요 업무상 위험에 장기적으로 노출됨을 의미한다. 그러한 위험에 노출되는 기간은 “단일 업무상 위험 평가서”에 기록되며 이에 따라 조기퇴직이 될 수도 있다. 사용자는 이 제도가 복잡하고 불확실하다고 지적해왔다. 실제로 이 제도는 현재 작동하고 있지 않다. 유해하거나 심지어 위험한 작업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이 제도의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이 연이어 시행된 개혁은 연금제도의 성장 동력을 끊어 놓았다. 연금자문협의회의 2022년 보고서는 이를 명확하게 지적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연금제도가 지속가능하긴 하지만 퇴직자의 생활수준은 20~30년 후에 하락하기 시작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2022, Insee Première, n° 1935.

프랑스의 연금제도 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이 2017년에 대통령으로 선출되었을 당시의 주요 공약 중 하나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2019년에 연금제도의 토대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구조적인 연금개혁안의 실행에 착수하였다. 이 개혁에 대해 노동조합은 찬반으로 갈렸다. 최대 노동조합인 프랑스민주노동총연맹(CFDT)은 이와 같은 이른바 “구조적” 개혁을 지지한 반면에, 다른 노동조합들은 결과적으로 연금액이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로 이에 반대하였다. 마크롱의 프로젝트는 1990년대 중반 스웨덴에서 실시된 제도와 유사한 것으로, 이른바 단일 점수제(single points-based system)였다. 이 개혁에 반대한 이들 중 상당수는 스웨덴식 개혁의 결과 연금액이 감소하였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개혁은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되었지만 3년 후 2022년 4월에 재선된 마크롱 대통령은 본질적으로 전혀 다른 연금개혁 방안을 다시 제시하였다. 이번에는 구조적 개혁도 아니고 제도의 전면 개편도 아니었다. 단지 법정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하는 것뿐이었다. 이러한 변화의 효과는 바로 나타날 것이다.

법정 정년이 연장되면서, 노동자 300인을 초과하는 기업에서 고령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신규로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하는 이른바 “시니어 인덱스(senior index)”를 포함한 기타 규정들은 주목을 받지 못했다. 최저 연금액은 단계적으로 인상되며 장기 경력자의 조기퇴직 기회는 소폭 확대될 예정이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고령 노동자의 취업률을 높이고 남녀 간 임금격차를 줄이면 향후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할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 마찬가지로 기여금을 소폭 인상해도 (급여의 0.8%) 예상되는 적자를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대신 정년을 기준으로 하는 방안을 택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협의를 거부하고 고령 노동자의 고용에 관한 모든 조치들을 유보하였다.

이 개혁안에 대해 노동조합들은 모두 반대하였다. 정부와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은 완전히 일관성을 잃었고, 여러 차례의 홍보 실수와 고의적인 사실 왜곡으로 메시지는 모호해졌다. 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나면서 결국 대통령은 논쟁에서 승리하지 못했다. 여전히 여론은 이 개혁에 대해 대체로 적대적이다.

2023년 1월과 4월 사이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 국민의 2/3가 이 개혁에 반대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재 취업자들을 고려한다면 반대율은 80%가 넘고 이 개혁으로 특히 타격을 입을 노동자 및 재직자를 기준으로 90%에 이를 수도 있다. 3월에 이 개혁안은 진지한 논의나 표결도 없이 국회(하원)와 상원 사이를 오갔다. 결국 정부는 법안을 표결 없이 통과시킬 수 있는 헌법적 수단을 사용하였다. 프랑스 헌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행정부는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하지 않더라도 통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현재 재임된 마크롱 대통령은 2022년 선거 이후에 국회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은 상태이다. 이 헌법 조항에 의하면, 불신임 투표에서 국회의원 전체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지 않는 한, 정부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 법안은 (전체 의원 574명 중) 겨우 9표 차이로 불신임 투표에서 살아 남았다.

이후 다른 여러 국가들이 그러하듯이,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이 법안은 헌법위원회에 상정되어 프랑스 헌법의 정신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심의하였다. 헌법위원회는 법안에 대한 국민 투표 실시 요청만이 아니라 법안의 반대 청원에 대한 판결도 내린다.

노동조합들은 헌법위원회를 정치적 법원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신임이 낮다. 예상했던 대로, 헌법위원회는 “예외적으로” 재정법안을 선택한 것에 대해 입법 수단이라는 논평만을 남기고 4월 14일에 개혁을 승인하였다. 또한 2008년에 헌법에 신설된 의회-국민 공동 국민투표 발의 제도¹²⁾에 따라 연금개혁안을 국민투표에 부치자는 요청도 거부하였다.

노동조합들은 연금개혁안에 대한 논의를 재개할 수 있도록 마크롱 대통령에게 “유예”를 요구했지만,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밤에 입법을 공포하였다. 노동조합들은 입법절차가 합법적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당하지는 않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49조 제3항을 이용하여 개혁을 승인하고 서둘러 입법을 공포한 후에도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고 거리 시위는 새로운 계기로 인해 지속되었다.

■ 향의의 중심에 선 노동조합

프랑스에는 매우 다양한 노동조합이 존재한다. 최대 규모의 두 노동조합은 프랑스민주노동

12) 편집자 주: 국회의원 1/5과 유권자 1/10의 동의로 법안을 국민투표에 회부할 수 있는 제도.

총연맹(CFDT)과 프랑스노동총연맹(CGT)으로서, 여러 현안에 있어 서로 크게 대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정 정년의 연장이 발표되자마자 이 두 노동조합은 다른 모든 노동조합과 청년운동 조직을 동원하여 노조연대를 구성하였다. 이 노조연대는 갈등 시기 내내 연대 체제를 유지하면서, 주중에는 시위와 파업을 조직하고 토요일에는 가두행진을 번갈아 하는 방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행동을 조직하였다. 일반적으로 시위 규모를 축소 보도하는 경향이 있는 정부도 이번 시위가 1968년 5월과 6월 이후로 프랑스가 경험한 최대 규모의 시위라는 점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번 시위의 특징은 소도시의 참여에 있는데, 소도시의 시위는 대도시에서 목격되는 대규모 집회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대부분이 농촌 지역인 프랑스의 군(départements) 단위에서 열린 여러 시위에는 그 지역 주민의 상당 부분이 참여하였고, 이는 국민들의 사회적 불만이 연금 문제를 훨씬 넘어서 심각한 수준에 있음을 보여준다.

심각한 경찰 폭력을 보여주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논쟁의 초점도 정책적 전술로 이동하였다. 프랑스의 가장 오래된 NGO 중 하나인 인권연맹(Human Rights League)은 이를 두고 “프랑스 국가의 권위주의적 행태”라고 비난하였다. 대통령의 지지자들조차도 그의 결정에 우려하고 있다며 학자들도 대통령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노동조합은 단순한 사회적 갈등을 훨씬 더 넘어서는 규모로 투쟁을 조직하였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제동을 거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원하던 대로 프랑스를 완전히 멈추게 하는 데 이르지 못했다. 파업은 그다지 결정적인 무기가 되지 못했다. 1968년처럼 파업으로 나라를 멈추게 할 수 있었다면 결과는 분명 달랐을 것이다.

■ 결론 : 사회적 위기에서 정치적 위기로

연금개혁으로 촉발된 갈등 시기 전반에 걸쳐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프랑스 인구의 대다수인 70%가 법정 정년의 64세 연장에 반대한다. 헌법 제49조 제3항이 발동된 바로 다음 날, 프랑스 국민의 62%는 시위가 지속되기를 원하였다. 이와 같이 장기화된 대규모 반대는 정치적 제도에 타격을 입히는 정당성의 위기로 이어졌다. 또한 노동조건에 대한 의문도 제기

되었다. 집권 세력들은 이러한 문제를 뒤늦게야 인식한 듯, 이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의사를 밝혔다. 사실 이 문제는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많은 부문에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구할 수 없었던 시기에 이미 드러나기 시작했다. 다른 국가들도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예를 들어 미국의 “대규모 퇴직현상(Great Resignation)”), 프랑스는 노동자들이 노동과 맺고 있는 관계나 노동조건에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에 있다.¹³⁾

프랑스에서 민감한 사회적 이슈는 합의에 도달하기가 힘든 경우가 적지 않다. 절대왕정의 유산이라고 할 것이다. 마크롱 대통령은 유연하지 못한 태도 때문에 많은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남은 임기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국가를 개혁할 수 있는 역량도 위축시킬 수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개혁 법안이 입법화된 후에, 자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것을 노동조합들에 요청하였다. 모든 노동조합이 이러한 제안을 무례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노동조합에 대한 존중을 요구하였다. 노동조합 측에서는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기념일인 5월 1일 노동절 이전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모든 노동조합이 개혁에 반대하는 대규모의 흥겨운 민중 집회를 촉구하였다. 한편 마크롱 대통령은 담론의 주도권을 되찾고자 애쓰고 있다. 대통령이 프랑스의 지방을 방문했을 때 시위대들이 냄비를 두드리며 그를 맞이했다는 사실은 아직도 위기 상황임을 보여주는 분명한 징표이다. 결국 6월 초 연금개혁을 시행하는 첫 번째 법령이 발표되었으나 노조는 다시 시위를 조직하였다. **KLI**

13) Eurostat(2022), Accidents at work statistics, <https://ec.europa.eu/> (2023.7.6); Le Monde, “La qualité de l’emploi et du travail en comparaison européenne : une contre-performance française?”, 2023.5.29; DARES(2022), “Quels sont les salariés les plus touchés par les accidents du travail en 2019?”, <https://dares.travail-emploi.gouv.fr/> (2023.7.6). 그러나 업무 중 사고에 대한 인식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유럽 내 단순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은 타당하다. 비교 결과는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